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 》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50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용 해 인 의 원 대 표 발 의 (제 2218150 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 (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3

I.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제221815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7.

다. 회 부 일 : 2026.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재생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

최근 지역 주민 참여형 자산화 사업, 지역 내 소규모 공사, 에너지 전환 관련 공사,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건설업 등록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임.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한 논거로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 주로 거론되어 왔음.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

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요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허용받는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예외 인정이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님.

이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오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¹⁾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

①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③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④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함.²⁾

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³⁾의 협동조합 홍보포털⁴⁾에 따르면, 소관 부처별로 보건복지부 3,156개, 교육부 962개, 문화체육부 556개 등 총 7,19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종 현황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있음.

【 소관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

(단위: 개)

소관부처	사회적협동조합 수	소관부처	사회적협동조합 수
경찰청	2	고용노동부	5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교육부	962
국가데이터처	1	국가보훈부	1
국가유산청	13	국민권익위원회	1
국토교통부	497	금융위원회	6
기상청	2	기획예산처	134
기후에너지환경부	167	농림축산식품부	339
농촌진흥청	8	문화체육관광부	55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6	법무부	5
보건복지부	3,156	산림청	178
산업통상부	96	새만금개발청	3
성평등가족부	128	소방청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외교부	7
중소벤처기업부	104	지식재산처	1
질병관리청	6	통일부	12
해양경찰청	2	해양수산부	20
행정안전부	215	합계	7,192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홍보포털-협동조합 현황-주요통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부처별)(2026.6.8.)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4) <https://www.coop.go.kr>

【 사회적협동조합 업종 현황 】

(단위: 개)

연번	업종	사회적협동조합 수
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52
2	교육 서비스업	1,321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71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5
5	농업, 어업 및 임업	402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3
7	제조업	174
8	도매 및 소매업	101
9	숙박 및 음식점업	91
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7
11	출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9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13	국제 및 외국기관	66
14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54
15	건설업	50
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9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
18	운수업	14
19	광업	2
20	미기재*	13
합 계		7,192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홍보포털-협동조합 현황-주요통계-협동조합 설립현황 엑셀 다운로드 자료(2026.6.8.) 재구성

*주- 업종 미기재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사업으로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 및 지원사업, 통합돌봄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예술품 임대 판매 대여 수장고 운영, 발달장애예술단 예술교육 및 공연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이 중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50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주거복지관련 공동사업 개발 및 공동수주사업, 인테리어, 도배·목공·타일 등 공사 및 교육서비스 등이 있음.

【 건설업 업종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

주요 사업	주사업유형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주거복지관련 공동사업 개발 및 공동수주 사업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관리프로그램 제공사업 등	지역사업형
금속, 창호, 샷시 등 사업활동을 통한 지역 취약계층 지원 및 후원, 주택보수 사업	지역사업형
인테리어, 공사(도배, 목공, 타일 등), 교육서비스	취약계층 고용형
저소득 취약계약을 위한 주택건설 및 주택임대관리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화장실개선 포함)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건축자재 관련 교육 및 캠페인 홍보사업	지역사업형
도시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사업, 도시 및 지역사회 관련 교육사업	지역사업형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사업형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관련 위탁사업	위탁사업형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위탁사업형
실내건축·창호공사, 습식·방수공사, 도장공사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도배, 도색 등 주거공간 환경정비 지원사업	지역사업형
생활환경개선 사업(주거복지 등)	지역사업형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개보수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역사업형
사회주택 보급 및 활성화사업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에 대한 도배, 타일, 이미용 서비스를 통한 생활 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시설 및 주택보수유지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사업형

주요 사업	주사업유형
건축 및 집수리 등 주거복지사업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업형
주거공동체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역사업형
주거생활안정사업,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등	지역사업형
건축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 시설물개선 및 관리사업,	지역사업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등	취약계층 고용형
주거복지사업, 주거안전사업, 반려동물 관련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실내건축·금속구조물·창호·도장·습식·방수·석공사 및 조경공사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컨설팅	지역사업형
조경식재공사업, 조경관리, 인력제공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청소, 소독방역, 홈케어 생활환경개선 사업	지역사업형
여성주거공동체 공급 및 운영, 여성1인가구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농산어촌 집수리 사업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의 조경관련 컨설팅, 용역 및 관리 사업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역사업형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마을기업, 공동체 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련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축관련 교육사업 등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역사업형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홍보포털-협동조합 현황-주요통계- 협동조합 설립현황 엑셀 다운로드 자료(2026.6.8.) 중 발췌

한편, 현행법 제9조⁵⁾는 제1항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되, 다만 대통령령⁶⁾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석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는 없고, 그 사업 범위가 현행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현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한정됨.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제9조제3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현행법 제10조⁷⁾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업 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보다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①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 재화·서비스

7)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우선 구매,⁸⁾ ②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한도 확대(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⁹⁾¹⁰⁾ ③사회적기업

8)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으로 인증¹¹⁾받은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 가산평가¹²⁾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들을 두고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1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

있는데,

동 지원 규정들이 기존 건설사업자에게는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확대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 및 비영리법인 설립 본래 취지와 함께 기존 건설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을

가기준: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15점):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별표 3]부터 [별표 5]에서도 [별표 2]와 유사하게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 가산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등록 규정의 취지(경쟁중립성, 비영리재산의 위험노출 방지, 건설산업 진흥 정책 측면 등)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 등이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업자에 비해 특혜로 작용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대신 시공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신중 검토 필요 또는 반대 입장이며, 그 외에 고도의 전문성 및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투자가 필요한 건설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대한건설협회), 사회적협동조합의 저가 수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거나 공공공사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5천만원 미만 공사를 사회적협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게 될 우려(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91